

『구미시 축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축산업 및 축산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, 축산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지원을 제한할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 및 조례 개정에 맞추어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지원을 제한할 근거 마련
(안 제6조의2 신설)

나. 상위법령 및 조례개정 등에 따른 조문개정(안 제2조, 제15조, 제16조)

- (현행)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

(개정)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

- (현행) 「구미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

(개정) 「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- (현행) 「구미시 재무회계 규칙」

(개정) 「구미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

다. 위촉직 위원 위촉시,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(안 제11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축산법」,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, 「양성평등기본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지원 대상을 관내에 축산 관련 사업장을 두고 관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고, 관계 법령 위반 시 지원 제한 근거 마련과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- 지원 대상을 관내로 함으로써 관내 거주 정착을 통한 인구 유입이 기대되며 무분별한 축사 신축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방지 및 향후

사육 마릿수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과 가축전염병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- 특히,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지원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자연환경과 공존하는 미래 축산업을 육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